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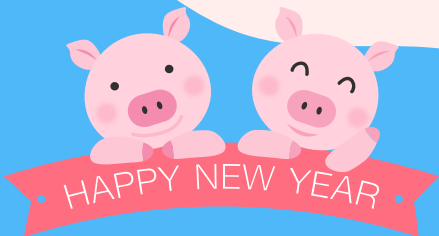


국민권익위원회

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!

청탁금지법,
명절 선물 주고 받기
어렵지 않아요 ~





1 친구, 친척,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(○).

2 공직자가 친구, 친척,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(○).



명절선물

Tip 2

5만원

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*
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,
사고·의례 목적으로 주는
명절 선물

10만원

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**



*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, 유관기관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 등

** 농수산물에는 축산물·임산물 선물이 포함됩니다.

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
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, 그 외 선물은
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.

농수산물
선물
5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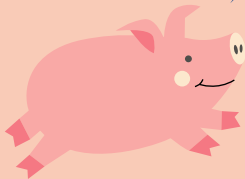
가
능

그 외
선물
5만원

농수산물
선물
4만원

불
가
능

그 외
선물
6만원





- (1) **금전, 상품권 등 유가증권**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
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.
- (2)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*
에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의례 목적으로 볼 수
없으므로 **어떤 선물**도 줄 수 없습니다.

인허가 신청 민원인, 지도·단속
대상자, 입찰 참가자, 고소·
고발인, 피의자 등



담당 공직자



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

명절선물

Tip 5

선물을 받으신 분이 공직자
(공직자의 배우자)인가요?

NO
아니요

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예 YES

아래 사유에 해당하나요?

<예시>

- 친족이 보낸 경우
- 상급자 → 하급자
- 동창회·친목회등 기준에따른 제공
- 기념품, 홍보용품, 경연·추첨 등
-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

NO
아니요

공직자가 선물을 보내신 분과
직무 관련이 있나요?

NO
아니요

5만원 넘는(100만원 이하)
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예시>

- 유관기관과 업무협조
- 각종 간담회, 회의 등 제공
- 산하기관 → 감독기관
- 하급자 → 상급자

예 YES

5만원 넘는 선물도
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예 YES

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악재의
목적이 인정되나요?

NO
아니요

금액에 상관없이
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예 YES

5만원 이하의 선물을
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예시>

- 인·허가, 지도·단속등 담당 공직자
- 입찰, 감리등 담당공직자
- 인사·평가, 감사등 담당공직자
- 고소·고발, 심판·조사등 담당공직자



5만원 이상의
선물을 받은 경우

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,
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.

